제2996호 2023. 5. 3. 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: 홍 보 담 담 관 주 재 봉 전화: 3396-4957
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

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3-435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.....

◉ 고 시

◉ 공 고

제2023-434호 :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-납부기한 연장 통지 ......9

● 7] E}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a href="http://www.junggu.seoul.kr">http://www.junggu.seoul.kr</a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



제2996호 14-2 2023. 5. 3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435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 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.

2023년 5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('21.1.1.)에 따라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식품위생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- 2. 주요내용
- 조례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적용대상(안 제3조)
-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(안 제4조)
-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(안 제5조)
- 영업제한 및 행정조치(안 제6조, 제7조)
- 준 용(안 제8조)
- 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보건위생과, 주소 :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, 전화

: 02-3396-5652, 팩스 : 02-3396-8894, email : obedient2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,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http://www.jungqu.seoul.kr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식품위생법」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식품접객업"이란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, 나목의 일반음식점,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- 2. "옥외영업"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 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제1 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)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5조(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)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6조(영업제한) ① 구청장은「식품위생법」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996호 14-4 2023. 5. 3

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:00부터 다음날 07:00까지 옥외영업 을 금지한다.

제7조(행정조치)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「식품위생법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

- 1.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, 옥상 등의 경우에는 1.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, 난간은 철근콘크리트, 안전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영업자는 난간 주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2. 옥외영업장에는 음향장치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.
- 3.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, 향초, 난로․보일러(화목, 유류, 가스, 기타 화석원료 등)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- 4.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.
- 5.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, 파라솔, 테이블, 어닝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하여야 한다.
- 6.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별표 2]

#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

- 1.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(데우기) 등 조리가 불가하며, 옥내영업장에서 조리·가공한 음식 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2.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,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3.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파라솔 등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옥내영업장으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 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.
- 5. 일반·휴게음식점 중 건물 내·외 영업장 합계 면적이 100㎡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고 시
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1호
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 9.),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제2019-185호(2019.6.7.) 및 제2022-479호(2022.12.8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호(2015.12.28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4호(2018.3.16.), 제2019-74호(2019.6.17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 5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19호(2023.3.2.)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세운제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등에 따라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89-1번지 일대 / 4,729.7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성 명 : 우리자산사탁(주) 대표 이<del>종근</del>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
- 4. 관리처분계확인가일 : 2018년 10월 26일
- 5.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
- 가. 시업시행자 대표자 변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대표자	이 창 하, 이 창 재	이 종 근

2023. 5. 3 제2996호 14-8 2023. 5. 3

- 나. 측량,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정
- 다.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: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
- 라, 토지소유권(사업시행 후) 변경 :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
- 6. 관련도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2) 비치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2호
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 9.),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제2019-185호(2019.6.7.) 및 제2022-479호(2022.12.8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,59(2015.7.30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5호(2018.3.16.) 및 제2023-14호(2023.2.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 6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20호(2023.3.2.)로 준공인가 및 공시완료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·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제74조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 / 6,987.30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성 명 : 우리자산신탁㈜ 대표 이종근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26일
- 5.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
- 가,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대표자	이 창 하, 이 창 재	이 종 근

- 나. 측량,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정
- 다.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: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
- 라. 토지소유권(사업시행 후) 변경 :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
- 6. 관련도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2) 비치

콩 고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434호

#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・납부기한 연장 통지
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·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3년 종 합소득(확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.

2023년 5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 1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

### 1) 납부기한 직권연장

대 상 자	수출기업인산불 피해 납세자				
대 상 자	성실신고 확인대상자	그 외 일반납세자			
연 장 기 간	2개월	3개월			
연장된 납부기한	2023. 8. 31.	2023. 8. 31.			

# 2)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(상세)

	구분	세부내용	제외대상
	수출 기업인	· '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· 관세청·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	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
ग∫र	산불 해 납세자	· 전국적 산불('23년 4월)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'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* [대전] 서구, [충북] 옥천군, [충남] 홍성군·금산군·당진시·보령시· 부여군, [전남] 함평군·순천시, [경북] 영주시, [강원] 강릉시	-

제2996호 14-10 2023. 5. 3

### 2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신청연장

### 신고·납부기한 신청연장

대 상 자	·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
연장된 신고기한	·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
연장된 납부기한	·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

- 3. 국세청으로부터 신고·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,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 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.
- 4.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 시 중구청 세무2과(金02-3396-5230,5220,55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5. 3

#### 타 7]

●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고시 제2023-01호
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, 제2014-119호 (2014,3,27.), 제2019-185호(2019,6,7.) 및 제2022-479호(2022,12,8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결정 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28호 (2017.12.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72호 (2019.6.12.), 제2020-10호 (2020.2.5.) 및 제2023-1호 (2023.1.4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 구 고시 제2019-24호 (2019.3.1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28호 (2023.4.26.)로 관리 처분계획(변경)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의 사본은 우리자산시탁 주식회사(02-6202-3000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5월 3일

2023. 5. 3

우리자산시탁 주식회사

#### 1. 종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○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#### 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(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의함)

○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이현동2가 151-1 일대

○ 면적 : 6,500.1㎡ (대지 3,377.2㎡, 정비기반시설 3,122.9㎡)

#### 3. 사업시행자의 명칭, 대표자 및 주소

○ 명칭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근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 (역삼동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(최초): 2019. 03. 13.

5.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일 : 2023, 01, 16,

#### 6. 건축시설

구분	<del>용</del> 도	규모	비고
	택지	3,377.2m²	구분지상권 설정 (지상권자 : 서울특별시 중구청)
시행면적	정비기반시설	3,122,9m²	도로(소로3-24): 195.4㎡ 공원: 1,316.4㎡ / 녹지: 412.4㎡ 주차장: 1198.7㎡ 연결데크: 111.8㎡ (상부보행자 도로, 면적 불포함)
	합계	6,500.1 m <sup>2</sup>	
7	건축면적	2,032.0136m²	건폐율 : 60.17%
	지상 <del>층</del>	31,703.2138m²	
연면적	지하층	19,425.4529 m²	
	합계	51,128.6667m²	용적율 : 937.60%
	층 수	지하9층 ~ 지상26층	높이 : 89.95m
용도		공동주택 (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), 근린생활시설	
4	수차대수	366대	

#### 7. 이전고시 내역

가)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

구분	용도	면적(㎡)	확정지번	비고
	합계	6,500.1		
	소계	3,377.2		
F11-1	대지	3,377.2		대지
택지	입체적도시 계획시설 (도로)	23.85 (상부보행자도로, 면적 불포함)	인현동2가 240	대지면적 중 일부 구분지상권 설정 (지상권자 : 서울특별시 중구청)
	소계	3,122.9		
	도로 (소로3-24)	195.4	인현동2가 240-1	
	공원	416.0	인현동2가 240-2	
정비	녹지	370.8	인현 <del>동</del> 2가 240-3	
정비 기반 시설	주차장	1,198.7	예관동 143	서울특별시 중구청 (무상 귀속)
	공원	900.4	예관동 143-1	(10 11 1)
	녹지	41.6	인현 <del>동</del> 1가 177-1	
	보행자전용도로 (연결데크)	111.8	(상부보행자도로, 면적 불포함)	

제2996호 14-14

2023. 5. 3

### 나)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 수

# ○ 공동주택 (아파트)

จ ⊐ะปม}-	규모별 (전용면적기준) 세대수								
공급대상	계	24A	24C	28A	29A	29C	40A	42A	
계	321	66	11	84	84	24	40	12	
토지등소유자 (임대주택)	40						40		
체비지	281	66	11	84	84	24		12	

### ○ 공동주택 (도시형생활주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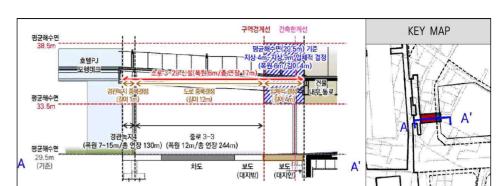
7.7-011	규모별 (전용면적기준) 세대수					<u>}</u>		
공급대상	계	24B	24D	28B	29B	29D	40B	42B
계	293	66	11	77	77	22	29	11
체비지	293	66	11	77	77	22	29	11

# ○ 근린생활시설

공급대상	면적 기준								
ত মুনা ও	호실수	충수	전 <del>용</del> 면적(㎡)	<del>공용면</del> 적(㎡)	기타 <del>공용</del> (㎡)	합계			
계	31		2,749.6382	1,147.3321	1,876.0009	5,772.9712			
토지등소유자	31	지하1, 지상1~2층	2,749.6382	1,147.3321	1,876.0009	5,772.9712			

- 다) 새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: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무상 귀속
- 보행자 전용도로 (입체적 도시계획시설)

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구분			비고	
	보행데크 연결통로		길이		4m		
			폭		6m	서울특별시 고시	
			높이	도시계획시설	지상4m~지상9m (평균 해수면 33.5m~38.5m)	제2022-479호 (2022.12.8.)	
				비도시계획시설	지상4m미만, 지상9m초과		
세부사항		<ul> <li>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 <ul> <li>L=17m, B=6m</li> <li>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</li> <li>경관녹지4 (L=1m)</li> <li>중로3-3 (L=12m)</li> <li>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입체적 결정</li> <li>인턴동2가 240 (L=4m)</li> </ul> </li> </ul>					



### 라)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건수

권리종	비고		
건수	권리종류		
1	부기등기	주택법 제61조 제3항	

# 마) 새로이 신설되는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명세

시설명	시설의 종류	권리의 종류	위치	범위	존속기간	지상권자
소로3-29 (보행자 전용도로)	보행데크 연결통로	구분 지상권	인현동2가 240	지상4m ~ 지상9m (평균 해수면 33.5m~38.5m)	시설물 존치시까지	서울특별시 중구청